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82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 박충권·최은석·우재준

김상훈 • 이인선 • 김재섭

서지영 · 정동만 · 박성훈

백종헌 · 김승수 · 김성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업무
-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업무
-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업무
-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관
	련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u>업무</u>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
	서의 신변보호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